양산 금호리첸시아 입주자모집공고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년 04월 07일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본 주택은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2015.4.1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는 2016.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개정시행일 : 2017.1.1.)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기존 주택형 표기방식(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순위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양산시)의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12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및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당첨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당첨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 보다 만65세 이상자 및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하여 배정하며,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 층을 말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6.11.15)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7.1.20. 시행)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에 대하여 그 실제 거래가격(아파트 공급가액, 발코니등 옵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급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외국인 계약을 포함함) ▣ 공급질서 교란자 처벌(주택법 제65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 청약안내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신청 이전에 인터넷 뱅킹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6.11.15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주택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주식회사 오봉 "수탁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2016.11.30.일자로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양산시 건축과 - 6738호 (2017.04.0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402번지 ▣ 대지면적 : 4,363.6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44층 2개동, 총 23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 총 90세대 : 일반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24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3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4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대상

(단위:㎡,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세대별 공급 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공급세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계	일반분양 세대수	계		
민영주택	2017-000413-01	84.471A	84.471	28.603	113.074	50.434	163.508	12.351	8	12	8	2	30	50	80	2	2020년 5월
	2017-000413-02	84.306B	84.306	28.217	112.523	50.335	162.858	12.327	8	12	8	2	30	49	79	2	
	2017-000413-03	84.202C	84.202	29.064	113.266	50.273	163.539	12.312	4	6	4	1	15	24	39	1	
	2017-000413-04	84.123D	84.123	28.704	112.827	50.226	163.053	12.300	4	6	4	1	15	24	39	1	

■ 공급금액

(단위:원)

주택형 (전용면적)	동 (호라인)	세대수	층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0%: 계약시	계약후30일이내	중도금(60%) 1회(10%) 2017.9.25	2회(10%) 2018.2.25	3회(10%) 2018.7.25	4회(10%) 2018.11.25	5회(10%) 2019.4.25	6회(10%) 2019.9.25	잔금 30% 입주시
84.471A	102동 (3호라인)	1	5층	81,755,600	231,244,400	**313,000,000**	10,000,000	2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93,900,000
		5	6층~10층	83,584,000	236,416,000	**320,000,000**	10,000,000	2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96,000,000
		10	11층~20층	84,367,600	238,632,400	**323,000,000**	10,000,000	2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96,900,000
		10	21층~30층	85,673,600	242,326,400	**328,000,000**	10,000,000	2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98,400,000
		10	31층~40층	86,979,600	246,020,400	**333,000,000**	10,000,000	2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99,900,000
		4	41층~44층	88,285,600	249,714,400	**338,000,000**	10,000,000	2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101,400,000
84.471A	102동 (1호라인)	1	5층	80,972,000	229,028,000	**310,000,000**	10,000,000	2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93,000,000
		5	6층~10층	82,800,400	234,199,600	**317,000,000**	10,000,000	2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95,100,000
		10	11층~20층	83,584,000	236,416,000	**320,000,000**	10,000,000	2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96,000,000
		10	21층~30층	84,890,000	240,110,000	**325,000,000**	10,000,000	2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97,500,000
		10	31층~40층	86,196,000	243,804,000	**330,000,000**	10,000,000	2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33,000,000	99,000,000
		4	41층~44층	87,502,000	247,498,000	**335,000,000**	10,000,000	2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100,500,000
84.306B	101동 (2호라인) 102동 (2호라인)	1	5층	81,233,200	229,766,800	**311,000,000**	10,000,000	2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93,300,000
		10	6층~10층	83,061,600	234,938,400	**318,000,000**	10,000,000	2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95,400,000
		20	11층~20층	83,845,200	237,154,800	**321,000,000**	10,000,000	2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96,300,000
		20	21층~30층	85,151,200	240,848,800	**326,000,000**	10,000,000	2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97,800,000
		20	31층~40층	86,457,200	244,542,800	**331,000,000**	10,000,000	2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99,300,000
		8	41층~44층	87,763,200	248,236,800	**336,000,000**	10,000,000	2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100,800,000
84.202C	101동 (3호라인)	5	6층~10층	82,016,800	231,983,200	**314,000,000**	10,000,000	2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94,200,000
		10	11층~20층	83,322,800	235,677,200	**319,000,000**	10,000,000	2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95,700,000
		10	21층~30층	84,628,800	239,371,200	**324,000,000**	10,000,000	2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97,200,000
		10	31층~40층	85,934,800	243,065,200	**329,000,000**	10,000,000	2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98,700,000
		4	41층~44층	87,240,800	246,759,200	**334,000,000**	10,000,000	2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100,200,000
84.123D	101동 (1호라인)	5	6층~10층	80,710,800	228,289,200	**309,000,000**	10,000,000	2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92,700,000
		10	11층~20층	82,016,800	231,983,200	**314,000,000**	10,000,000	2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94,200,000
		10	21층~30층	83,322,800	235,677,200	**319,000,000**	10,000,000	2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95,700,000
		10	31층~40층	84,628,800	239,371,200	**324,000,000**	10,000,000	2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97,200,000
		4	41층~44층	85,934,800	243,065,200	**329,000,000**	10,000,000	2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98,700,000

※ 상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주택법시행령 제60조] ※ 상기 금액은 발코니 확장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금액임.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총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인지세 포함), 취득세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음. • 분양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이며 해당 동에 따라 층수는 다를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의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확정측량)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는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함.(이때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가 확인한 건축공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납하여야 함.(단, 주택의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입주예정일보다 실입주일이 당겨질 경우 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가 지정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 납부 및 입주를 하여야 하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상 입주예정일과 무관하게 실입주지정기간(잔금 납부기간) 경과 후 잔금을 납부할 시 연체료가 부과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를 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공통사항

• 신청일시 및 장소

구분		일자	시간	장소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일시	2017.04.12.(수)	10:00~14:00	당사 견본주택
	당첨자 선정 / 공고	2017.04.12.(수)	16:00	

※ 특별공급 신청 과다로 서류 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일시가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세대)

주택형	84.471A	84.306B	84.202C	84.123D	계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8	8	4	4	24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12	12	6	6	36
신혼부부 특별공급	8	8	4	4	2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2	2	1	1	6
계	30	30	15	15	90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참조)
⇒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 할 수 있습니다.(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1세대내 1인만 신청 가능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해당자 중 국가유공자등, 장애인, 철거민	청약통장 필요 없음
그 외의 특별공급 신청자 (장기복무군인,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주택형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 총액이 주택형별에 청약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함.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수는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수 배정결과는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에 의거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 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당첨자 선정/공고와 관련하여 해당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선정/공고가 가능하나, 해당 세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당첨자 선정/공고할 계획임.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일반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신청방법: 해당 청약신청 일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을 하셔야 함. • 계약체결일: 2017. 04. 25(화) – 2017. 04. 27(목)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유의사항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 시 당첨이 취소됨. – 특별공급 신청 접수는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본인이 특별 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특별공급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음.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 신청된 경우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되지 않음. –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4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이내]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지자체,중소기업청 등)의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의사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 가족이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소기업근로자,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에 의함.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36세대 / 주택 건설량의 15% 이내]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3[2016.12.13])에 따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하며,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3호를 준용함, 신청 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해당사항	비고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자녀 이상	5		자녀(임신중에 있는 태아 및 입양한 자녀를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임신중에 있는 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신청자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신청자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도거주 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 신청자가 해당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이상~10년미만	15		
		1년이상~5년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주민등록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3)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24세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건설량의 10%이내]

구분	내용
공급 대상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의 경우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2016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통계청 고시) – 단독벌이: 3인이하 4,884,448원이하, 4인 5,630,275원이하, 5인 이상 5,630,275원 이하 – 맞 벌 이: 3인이하 5,861,338원이하, 4인 6,756,330원이하, 5인 이상 6,756,330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596,595원)+(1인당 평균소득 356,074원)*(N–5)]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며,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임신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됨.
입주자 저축 (청약자격 요건)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 총액이 주택형별에 청약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청약 순위	–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청약순위의 출산은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동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1.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양산시와 경상남도에 거주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이후 잔여물량 발생시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배정함. 2.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포함) 3. 미성년인 자녀수(태아포함)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자녀수 산정방법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하여 산정.

구분	해당자격		소득 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소득입증서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중소득세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신규 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 국민연금공단
		법인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638호]에 따름.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6세대 / 주택 건설량의 3%이내]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 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서 정하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예)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 • 기간 산정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대주 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소유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점자 발생 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가점점수 산정 기준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준용함)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 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제외)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해당 기관장의 인정 서류.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만18세이상 자녀의 혼인관계여부 확인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또는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한부모 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접수 장소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0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본인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포함)으로 간주함

2. 일반공급

▶ 공통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 미성년자 포함)[국내에 거주하는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양산시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본 주택에 청약관련통장으로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함(1인 2건 이상 신청 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12.06.25.)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7일)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변경된 거주지역에 해당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주거지 변경 없이 청약 신청하거나 예치금액이 큰 지역에서 작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청약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전용면적 135㎡ 이하	모든면적
양산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울산광역시 거주자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부산광역시 거주자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청약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수시로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 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 관련 예금 및 신청자격
민영 주택	양산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거주자	1순위	전주택형	• 가점제 적용(가점제 40%, 추첨제 6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 총액이 주택형별에 청약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하고 주택소유수에 따라 감점적용하여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됨.
		2순위	전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 (양산시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거주자 포함)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분] / 추첨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미성년자녀 3명이상인 당첨자가 최하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배정한다.

▣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일정

청약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 시간	당첨자 발표
1순위	2017.04.13.(목)	인터넷 청약	• 접수 사이트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청약홈페이지(www.apt2you.com) • 접수시간 08:00~17:30	• 일시 : 2017.04.20.(목) • 장소 : – 당사 견본주택 – 사업주체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은 상기 매체 및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2017.04.14(금)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창구 접수시간 : 해당 청약 신청일 09:00~16:00) ※ 2순위 인터넷 청약 접수자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KEB하나,신한은행)에 계좌 개설 후 2순위 청약에 참여 가능합니다. ※ 2순위 접수는 청약자가 지정한 거래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정표 중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접수 중이라도 접수 완료되지 않고 17:30분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신청 접수방법

• 공 통 :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점제 청약 접수를 원칙[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 추첨제) 선택 불가하며 가점제로 자동 접수됨]으로 하며, 가점제 입주자 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포함) 청약통장 가입한 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한 자
이용대상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서비스 이용신청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분 – 2순위 : 주택청약 참가은행에 계좌 개설 및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고를 예치 하신 분(단, 1회 및 1일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 청약접수 기간 중 은행 전산서버의 과부하 등으로 인해 공인인증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람.	
이용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접속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배우자 포함)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주택 청약 참가은행 비치) –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 (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단,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처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

구 분	금 액	신청금 납부 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인터넷 청약 시	–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청약 시	– 가능한 청약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바랍니다.

※ 상기 나열된 2순위 창구 접수가능 은행의 각 지점 접수 시, 사전에 해당은행 본·지점에 문의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당첨자 발표 익 영업일(2017.04.21) 이후부터 평일(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대 상	환불기간	환불장소	구 비 서 류	
창구 청약신청자 (자동환불미신청자)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증 –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제3자 대리 환불시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 구비서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단,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창구 청약신청자 (자동환불신청자)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자동이체	– 자동환불 신청계좌(접수증에 개설된 본인명의 요구불계좌에 한함)로 자동 환불	
인터넷 청약신청자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자동이체	– 본인이 2순위 청약 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이체됨	

※ 2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2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낙첨자에 대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청약가점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동일 순위(1순위)간 경쟁이 있을 경우 공급물량의 40%를 가점제로 공급함. • 가점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가점점수가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 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함.※ 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여 사전에 익히고 필요한 사항을 먼저 상담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가입자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가입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0점"으로 산정함.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함)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3) 1)부터 2)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합니다.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상기 기재사항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해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2)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3)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4)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됨.5)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7)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 등본: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 등본: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② (현재: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으로 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40조,41조,46조 특별공급은 적용 제외) 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함)하며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수 배정함.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대상자의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 법령에 의거 공급함.
공 통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단,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가 신청 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경우 다른 청약자보다 1층(1층이 없는 경우 최하층)을 우선 배정함. 1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부적격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당사로 연락처를 통보한 예비당첨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舊주택은행포함)에서 청약 접수한 자에 한함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 접수한 자에 한함
이용기간		2017. 04. 20 ~ 2017. 04. 29 (10일간)	
이용 방법 및 절차	인터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부동산⇒청약 ⇒당첨확인 ⇒주택별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당첨자사실조회 ⇒ 주택별 조회
	전화 ARS	☎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 1369(서비스코드 : 5#)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청약신청 시 SMS 당첨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 일시	2017. 04. 20 (목) (단, 제공시간은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중복 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 및 당첨 시 모두 무효 처리되고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단,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일시(정당 당첨자): 2017년 04월 25일 (화) ~ 2017년 04월 27일 (목) 10:00~16:0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계약금 납부: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며,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하여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당첨 효력이 상실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분양대금 납부계좌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94437-04-017345	대한토지신탁(주)

–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자 성명 및 동·호수 기재[101동101호의 경우 : 1010101]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구 비 서 류	비 고
공통 (특별공급포함)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대리 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일반공급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이외 모두 제3자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 계약자의 인감도장	
		○	•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04. 0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 증명서 용도 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등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됨.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이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는 전산 관리됨. • 예비당첨자 중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8조 제1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중도금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금융기관,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대출금액,대출조건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본 주택은 2016년 7월 1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주택으로 2016년 7월 1일 발효된 경제정책 방향 중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 개선"에 따른 1인당 중도금대출 보증 건수 및 보증 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은행에서 중도금(1회차 내지 6회차)을 대출받아 납부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그 이후의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금 4회차 내지 6회차 대출이자의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한 대출이자를 잔금지급시까지 사업주체에게 상환하여야 한다.(중도금 1회차 내지 3회차는 "중도금무이자" 적용, 중도금 4회차 내지 6회차는 "중도금후불제"적용)

▣ 입주자 사전방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0년 05월경(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1개소, 어린이 놀이터 1개소, 북카페,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GX룸, 골프 연습장, 멀티미디어룸, 리렉스룸

▣ 발코니 확장

(단위:원,VAT포함)

구분(주거전용면적)	84.471A	84.306B	84.202C	84.123D
발코니 확장금액	무상 제공	무상 제공	무상 제공	무상 제공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마이너스옵션세대 제외)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제시된 선택형 외에 개별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등의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또는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확장되지 아니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샤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 품목 (유상옵션) – 별도계약

• 시스템에어컨

(단위:원,VAT포함)

주택형	구 분	구 성	공급 가격	비고
84.471A	선택1	주방+거실+안방	4,360,000	LG전자
	선택2	주방+거실+안방+침실1+침실2	6,920,000	
84.306B	선택1	주방+거실+안방	4,360,000	
	선택2	주방+거실+안방+침실1+침실2	6,920,000	
84.202C	선택1	주방+거실+안방	4,360,000	
	선택2	주방+거실+안방+침실1+침실2	6,920,000	
84.123D	선택1	주방+거실+안방	4,360,000	
	선택2	주방+거실+안방+침실1+침실2	6,920,000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임.※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시스템 에어컨 선택이 가능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 배관 및 콘센트를 설치하지 아니함)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정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대금 : 지정된 납부 일에 유상옵션 수납계좌로 무통장입금만 가능.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빌트인 냉장고

(단위:원,VAT포함)

구분	상 품 명	제 조 사	판 매 가	비고
전평형	삼성TBI(RS674CHQFSR)	삼성전자	4,810,000	일반형
	삼성TBI(RS647LHQFSR)		6,710,000	고급형

※ 옵션 선택에 따라 주변부 마감이 도배지 또는 가구판넬로 마감되며, 측면 경량벽체 유무도 달라지므로, 옵션계약서를 꼼꼼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옵션 미선택시, 일반냉장고 수납장으로 시공되며, 일부 대용량 제품은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 냉장고 수납장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냉장고 배치를 위하여 약 100cm의 폭이 확보되며, 보유하고 계신 냉장고에 따라 약 15cm 이상 돌출될 수 있습니다.

• 김치 냉장고

(단위:원,VAT포함)

구분	상 품 명	제 조 사	판 매 가	비고
84.471A 84.123D	R-D222WW	LG전자	1,430,000	

※ 옵션 미선택시, 일반냉장고 수납장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 전시된 빌트인 냉장고장보다 약 10cm정도 깊이가 깊어집니다.※ 일부 대용량 제품은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냉장고 돌출에 따라 식탁 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 일반 냉장고 수납장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냉장고 배치를 위하여 약 100cm의 폭이 확보되며, 보유하고 계신 냉장고에 따라 약 15cm 이상 돌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 냉장고 자리 뒷면에는 벽지가 시공되며, 냉장고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김치냉장고는 84.471A, 84.123D만 유상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단위:원,VAT포함)

구분	상 품 명	제 조 사	판 매 가	비고
전평형	RIC-S3A01DS	쿠첸	560,000	전기2+인덕션1
	CIR-ST320DSL		630,000	전기1+인덕션2

※ 옵션 미선택시, 3구 가스쿡탑으로 시공되며, 상기 금액은 제품 업그레이드 설치에 따른 차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하이브리드쿡탑 선택시 기존 가스쿡탑(3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전기, 인덕션 및 가스 사용에 대한 개인선호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쿡탑은 전기와 인덕션이 혼합된 제품으로 세대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누진 전기 요금이 부과됩니다.

• 전기오븐

(단위:원,VAT포함)

구분	상 품 명	제 조 사	판 매 가	비고
전평형	MZ385EBT	LG전자	440,000	일반형
	MZ941CLC		660,000	고급형

※ 전기오븐 미설치시 붙박이장이 설치되며, 붙박이장 설치시 후면 및 바닥, 천정에는 벽지, 마루 등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가구류 및 바닥재변경선택 판매가격

(단위:원,VAT포함)

품 목	주 택 형	판 매 가	비 고
현관중문	전평형	880,000	
폴리싱타일	84.471A	1,840,000	
	84.306B, 84.123D	1,720,000	
	84.202C	1,870,000	

※ 84.471A, 84.306B, 84.202C 타입은 슬라이딩도어로 설치되고, 84.123D 타입은 여닫이 2도어로 설치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납부 계좌 및 납부조건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우리은행	1005-603-184915	금호산업(주)
납부조건	계약금(옵션선택총금액의 10%,계약시), 중도금(옵션선택총금액의 10%, 2017.09.25), 잔금(옵션선택총금액의 80%)	

[유의사항]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유상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옵션 미선택 세대의 경우, 상기의 유상 옵션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 상기 유상 옵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유상 옵션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가구 플러스 옵션 선택 시와 미선택 시 차이에 의한 견복주택과의 공간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확장시 유상옵션 가구 선택이 가능하며 옵션 선택시 기타 선택형을 우선 선택하여야 선택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함.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름

구분	적용여부	비고
고기밀 창호	적용	–
고효율 기자재	적용	–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
절수설비	적용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원)

구 분	건축	전기	통신/소방	비 고
회 사 명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한국나이스기술단		V.A.T 포함
감 리 금 액	941,600,000	473,0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내용 및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제외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내용

(단위:원)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	보 증 서 번 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포함)까지	53,820,200,000	제01282017-104-00005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1조 제4호) 1.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3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형토지신탁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오봉이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건축주(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오봉이며, 금호산업(주)은 시공사로서의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며, 대한토지신탁(주)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주)오봉 및 시공사 금호산업(주)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 본건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위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주)오봉]과 수탁자[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주)오봉]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된다. •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주)오봉]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된다.

▣ 기타 유의사항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 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함.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정당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안내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를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건물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해서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계약내용에 따라 시공 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외에 근린생활시설 등 일체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해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예정임.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완충 녹지, 경관녹지, 공원, 역사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가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주변 시설 등은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모집공고일 현재 본 사업부지에서 문화재 발견으로 인하여 분양목적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될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계약해제 통지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됨.이 경우 본 사업의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반환일까지 연 2%의 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함. 수분양자의 분양목적물 공급이 가능하더라도, 문화재 발견에 따라 본 사업부지 일부에서 모집공고상 기재된 아파트동 신축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반환일까지 연 2%의 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함.

▣ 설계관련 유의사항

[건축사항] • 본 단지내의 공유시설(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시설의 위치변경, 내부 칸막이 변경 및 기타 공급면적 등의 경미한 변경은 "을"의 승인 없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품질개선, 하자발생예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은 "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변경을 진행할 수 있음. (이때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2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방법:형별면적(m2)x0.3025) • 면적 계산상 각 용도별 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본 사업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조경,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 등의 내외부시설물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하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향, 층에 따라 일조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 등에 표시되는 주변단지 및 건물, 시설물, 근린공원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된 내용을 임의 제작한 내용으로 이 분양계약서 작성 현재의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상부옥상에 실외기 및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 설계도서 확인. • 주민공동시설은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시설물 및 수량,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구성 이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해야 함. • 주민공동시설은 101동 4,5층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일부 세대는 이용상 불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당 상품의 기타공용, 계약면적은 단지공용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조경(수종, 식재개수 등) 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관리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으며, 특히 세대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음. • 조경, 조경수 식재는 시공 시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설계 변경에 따라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탈자, 오주제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함. • 건물의 건축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등이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실 대지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 조정, 관련법규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단지 조경 선형 및 세부 식재 계획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지적측량 성과도 및 각종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양산시 실시계획인가 과정을 통해 확정되므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 단지 특성상 사다리차 접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 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본 공사시 현장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저층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보안등, 옥탑 및 조경용 조명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일부 실은 인접한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음.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동통신용 중계기시설은 전자파 위해성 관련 민원 등으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해당 시설물은 입주 후 입주자와 이동통신사 간 협의를 통해서 설치 가능)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출입구, 놀이터, 동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설치되어 있음. • 단지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옥외 주민운동시설, 쓰레기수거함, 자전거보관소, 환기탑 등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조망될 수 있음. • 통합배선 네트워크 장비 중 Work Group Switch Hub, 세대 통합단자함 내에 시설되는 MultiPlexer는 기간사업자 제공 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 무인택배 및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옥탑이나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단지로고 사인물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면 마감재 종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미술장식품 위치 및 형태는 현재 미정인 상태며 추후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 확정, 설치될 예정임.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 외벽의 줄눈 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옥탑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뢰, 항공장애등, 소방용 고가수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일부 실 배치나 각종 가구, 가구 및 마감재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양홍보자료나 모형상의 부대복리시설의 각종 가구, 가구 및 마감재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부대시설의 경우 지하층 등에 설치되어 있어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에 불리할 수 있음. • 부대 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음. • 주동 1층 현관출입의 출입도어, 자동문의 위치, 경사로의 위치, 우편물 수취함 위치 등은 인테리어 계획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변경 및 준공인가 전,후 확정측량 등으로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유의사항]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분양 시 홍보물에 표현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전시용품이거나, 발코니 확장여부 또는 고객선택사항 계약에 따라 제공유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또는 동급이상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됨.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색상과 무늬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본공사시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음(주방,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본공사시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음.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부위는 현장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창호류(목창호 등),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욕실가구, 사워부스 등)는 후입찰 품목으로 본공사시 업체가 선정되므로 동등 유사제품으로 설치됨.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② 일반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④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강마루)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대 내 주방가구의 냉장고 크기, 에어컨 실외기 공간 및 다용도실의 세탁기, 김치냉장고 크기 등은 분양시점의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시점의 대형 가전이 출시될 경우 반영하기 어려움.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 면재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바닥재 설치되지 않음. • 세대 싱크대 주방가구 상판은 인조대리석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난방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수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음.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거실과 안방 이외의 실에 에어컨 설치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배관을 별도 설치하여야 하며,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실에는 에어컨 설치가 어려울 수 있음.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위치는 타입별, 실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됨.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됨. • 세대 환기설비인 환기유니트는 주방발코니 혹은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되며, 환기유니트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 시공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세대에 적용된 환기 방식은 바닥열을 이용한 급기 시스템이며, 공용욕실 배기팬과 연동됨. • 환기유니트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음.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발코니의 수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전기 분전반, 통신 통합단자함은 현장여건에 따라 현관팔장, WIC, 팬트리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누전차단기 작동 점검 시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장비 설치 시 수납물을 꺼내고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함. • 세대 내 실간 벽체 대부분이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함.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내부 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실별 치수에는 천정몰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 계획하시기 바람. •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동급 이상으로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성능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등은 제작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음. (문 개폐 시 걸림 수 있음) •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직접 노출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별도의 IP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로 제어시에는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구매 및 설치하는 가전제품에 따라 세대내 전기용량 부족 혹은 누진세가 발생할 수 있음.

[견본주택 설치 및 전시품목]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하며, 이 경우 전시세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 세대를 기준으로 디자인트렌드에 맞추어 각종 유상, 무상 선택사항을 반영하여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한 경우 또는 옵션선택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책장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소품 및 일부 연출용 벽지등은 전시용품으로 본 공사시 시공에서 제외됨.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에 설치된 일부 디스플레이용 벽체 마감, 전자제품, 전시용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약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 등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각 배선 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전시를 위한 가설건축물) 소방시설이며 본공사 시에는 설치사양 및 설치위치가 견본주택과 다름.

▣ 사업주체 및 시공사, 위탁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
상호	대한토지신탁(주)	금호산업(주)	(주)오봉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역2길 12, 3층
법인등록번호	110111-1492513	110111-0134877	234111-0060429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양산금호리첸시아.com

견본주택 위치 주소:양산시 중부동 402번지 (구 양산시외버스터미널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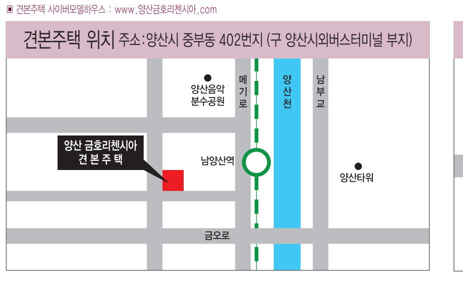

현장 위치 주소: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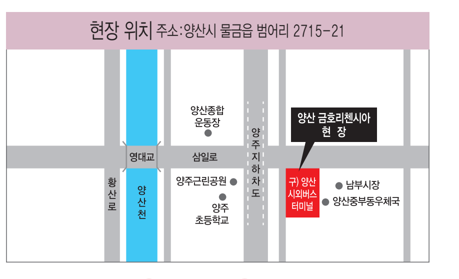

문 의 055.363·2211

전용면적 84㎡ 단일평형 총 237세대 아파트

시행사 대한토지신탁(주) DAEHAN REAL ESTATE TRUST CO., LTD 시공사 금호건설 위탁사 (주)五峰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시행/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